

파생상품시장 야간거래 FAQ ('25.4.28 기준)

※ 본 자료의 내용이 파생시장 업무규정 및 시행세칙과 다를 경우 규정·세칙이 항상 우선합니다.

거래·청산결제 제도

Q. 거래일의 개념은?

- A. 한국거래소는 파생상품시장 야간거래 도입에 따라 '당일 야간거래시간 개시시점부터 다음날 야간거래시간 개시시점 전까지'를 하나의 '거래일'로 새롭게 정의하였습니다. 즉, 오늘(T일) 18시에 개시하는 야간거래는 내일(T+1일) 정규거래와 하나의 거래일을 구성합니다. 이에 따라, T일 개시하는 야간거래분에 대한 손익은 T+1일 정규거래분과 합산하여 T+2일 결제됩니다. 또한 신규월물 등 새로 거래되는 종목은 야간거래부터 최초로 거래됩니다(단, 신규 상장상품의 경우 정규거래부터 거래됩니다). 다만 휴장일은 야간거래 개시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그날이 정규거래의 휴장일이면 당일 야간거래는 개시하지 않습니다.

<사례> '25.8.13(수) 18시 개시하는 야간거래는 8.14(목) 정규거래와 하나의 거래일에 속합니다. 광복절인 8.15(금)은 휴장일이며 이에 따라 8월 15일에 개시하는 야간거래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반면 8.14(목) 18시~8.15(금) 6시의 야간거래는 진행됩니다.

Q. 정규거래 중 CB 3단계 발동으로 주식시장 거래종결시 당일 FICC파생상품(국채선물, 미국달러선물 등) 야간거래는 진행되는지?

- A. 야간거래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주식시장 CB 3단계 발동 시 상품시장 구분 없이 쏠 시장의 당일 야간거래는 실시되지 않습니다.

수탁 제도

- Q. 파생상품 거래를 하던 기존 위탁자에게도 변경된 약관 동의와 위험고지서 재교부가 필요한지?
- A. 야간거래의 변화된 제도와 시장 특성을 고려해 기존 위탁자라 하더라도 야간거래 참여를 희망한다면 약관의 변경 승인 및 위험고지서 재교부가 필요합니다. 이는 야간거래 참여 의사와 위험요소에 대한 확인 여부를 점검하는 명시적 절차인바, 기존 파생거래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야간 거래 참여를 위해선 새로운 약관과 위험고지서 내용에 대한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 Q. 야간거래에 참여하지 않는 위탁자에게도 위험고지서 교부가 필요한지?
- A. 약관 미동의 등을 통해 야간거래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위탁자에 대해서도 향후 분쟁 예방 등을 위해 교부를 권고드립니다. 다만 위험 고지서는 금융투자협회의 소관사항이며 그 밖의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사항 등은 관계기관에 확인이 필요한 점을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Q. 야간거래 도입 후 사전 신고계좌에 대한 적용시점 변화는?
- A. 외국인통합계좌, 사후위탁증거금할인계좌, 일반 알고리즘계좌는 당일 정규 거래 종료시점부터 30분 내 신고 완료시 당일 개시하는 야간거래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16:15까지 신고된 알고리즘계좌는 오늘 18시에 개시하는 야간거래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어 계좌단위호가 처리(Kill-switch) 이용이 가능합니다.
- Q. 야간거래 시간 중 한국거래소가 대용가격을 공표하기 전까지 대용증권의 가격은 어떤 값을 쓸 수 있는지?
- A. 대용증권 기준시세 특례조항(세칙 §124)에 따라 대용증권의 해당 거래일 기준가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상장주권의 경우 당일 종가를 대용 가격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용증권의 가격은 기본적으로 증권시장 업무규정을 따르므로 전일 종가 등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따릅니다.

Q. 정규거래 장종료 후 증거금 부족액이 발생한 사후위탁증거금계좌에 대하여 당일 개시하는 야간거래에서의 수탁은?

A. 사후위탁증거금의 부족분을 다음 거래일 10시 이내 예약하도록 하는 現 운영체계는 유지됩니다. 즉, 부족액이 발생한 사후증거금계좌에 대해서 회원은 정규거래와 동일하게 위탁자가 장종 보유할 수 있는 위험노출액 한도 내에서 수탁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정규거래에서 위탁증거금의 장종 추가예약이 발생한 경우 당일 정규거래시간뿐만 아니라 당일 개시하는 야간거래시간에도 위험노출액 한도를 예약총액의 2배 이내로 설정해야 합니다. 다만 회원이 위탁증거금의 장종 추가예약 해제를 통지한 경우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대용증권 매도대금의 위탁증거금 지급·충당 반영 시점은?

A. 예약현금의 지급·충당액을 계산할 때 예약현금에 가산하는 대용증권 매도 대금과 관련하여 야간거래 장개시 전에는 결제일 도래 및 결제일 도래 전일의 매도대금에 한정하여 반영하지만, 야간거래 장개시 후에는 매도 시점과 무관하게 예약현금에 매도대금 가산이 가능합니다. 즉, T일에 T+2일 결제되는 대용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T일 정규거래 예약현금에는 반영되지 않으나 T일 저녁에 개시하는 야간거래부터는 T+1일(결제일 도래 전일)에 해당하므로 지급·충당 가능액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Q. 위탁증거금 추가예약 불이행에 따른 반대거래는 야간시간에 가능한지?

A. 유동성이 낮을 수 있는 야간시간대에 반대거래를 실시하면 투자자에게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다수 회원사들도 야간시간대 반대거래 의사가 없음을 고려하여 정규거래 시간에만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에 따른 반대 거래가 가능하도록 규정할 예정입니다.

Q. 야간거래 중 미결제약정 보유한도와 관련된 수탁거부는?

A. 정규거래 장종료 시점에 미결제약정 보유한도를 초과한 위탁자에 대하여 회원은 야간거래 중 미결제약정 증가 주문에 대한 수탁을 거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차익·헤지거래분임을 증빙할 수 있고 같은 거래일 정규 거래 시간에 신고할 예정인 경우 회원 책임하에 수탁이 가능합니다(해당 거래일에 최종거래일이 도래하는 종목 제외). 그 밖에 회원은 야간 장종 미결제약정과 직전 정규거래 장종료 델타 등을 통해 미결제약정 보유한도 위반을 사전에 예방·관리해야 합니다.